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 ~ 9



제1560호

2009. 7. 31.

조 례

제82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82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8
제82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82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제82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83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20
제83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28
제83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83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35
제83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83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83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44
제83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83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8
제83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2
제84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84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8
제84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61
제84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4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66

제84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1
제84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84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제84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4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5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85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85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5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85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85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제856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규 칙

제58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06
제58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6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중 랑 구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세부임무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예규,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를 통하여 민·관·군 통합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삭제(안 제1조, 안 제12조)
- 나. 「민방위기본법」 근거 조항의 변경(안 제9조제2호)
- 다.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하며,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10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과 같고, 동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절차를 위한 사항은 통합방위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동 운영내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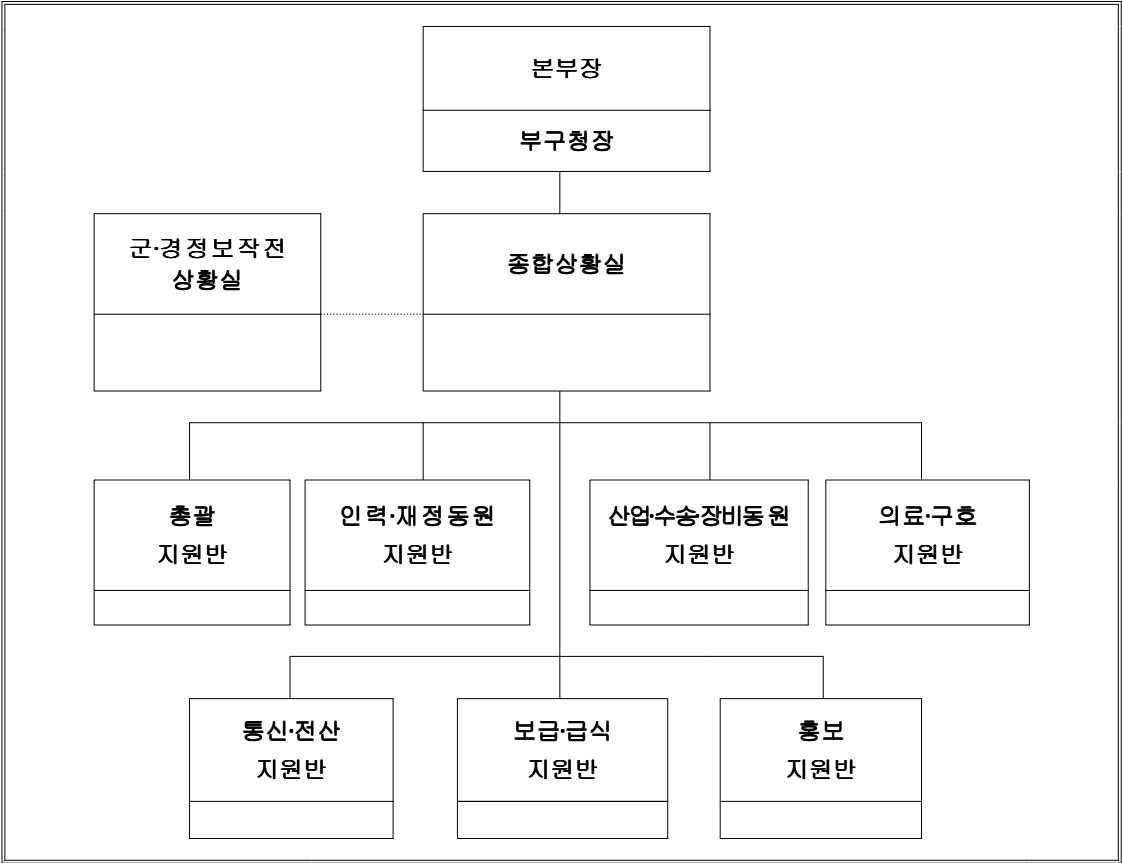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 방 위 지원 본 부 구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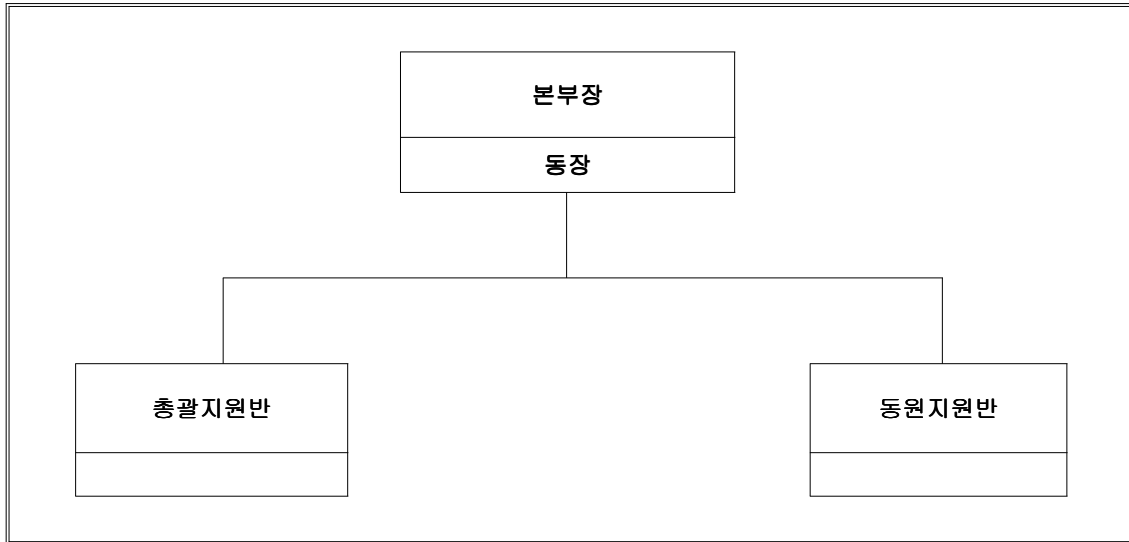
○ 구 청



[별표 2]

통 합 방 위 지 원 본 부 구 성

○ 동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하는 민원인 및 구청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에 대한 주차질서 확립과 요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 다.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①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월 정기권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일반권은 차량이 들어 올 때 발권기에서 주차권을 발급하고 차량이 나갈 때 발급된 주차권을 회수하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은 주차확인서를 받고 출차시킨다.

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하고 환불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근거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해당조항을 변경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명시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5조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
- 나.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
- 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 라. 제2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4조제5항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다.”를 신설
- 나. 제7조제1항 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를 “구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로 개정
- 다. 제9조제4항 “헌장의 중요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를 신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행정여건의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한다.”를 “구정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현장의 중요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군의 발전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우(안 제4조)

-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나. 예산지원(안 제5조)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

-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가족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에
낫표시를 하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 현재의
직제명으로 개정이 필요.

2. 주요골자

- 가.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로 개정
- 나. 제6조(간사 및 서기) 중 “동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동행정 담당주사”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중랑구지명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조 중 “동행정업무 담당주사”를 “동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징물의 종류 : 휘장, 캐릭터, 꽃, 나무, 새, 노래(안 제3조)

나. 구기의 제작, 계양 및 관리 등(안 제4조)

다. 구청장이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안 제6조)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 내지 (3)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 가능

라. 상징물의 사용제한(안 제7조)

(1)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중랑구를 상징하는 휘장, 캐릭터, 식물, 동물, 노래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꽃 : 별표 3
4. 나무 : 별표 3
5. 새 : 별표 3
6. 노래 : 별표 4

제4조(구기) ① 중랑구의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구기의 제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규격과 모양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에의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①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 상징물인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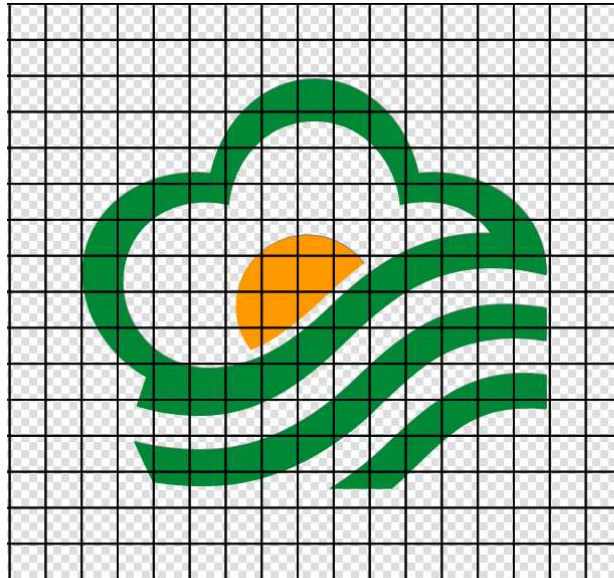
1. 기본형



2. 회장의 의미

배꽃잎과 꽃술은 찬란히 피어나는 꿈이
서린 살기좋은 중랑구를 뜻하며, 川(천)은
맑고 푸르게 중랑천을 가꾸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3. 그리드



4. 색상



JN Green
Process Color : C100%+Y100%
Pantone Color : 334C



JN Orange
Process Color : M40%+Y100%
Pantone Color : 1375C

[별표 2]

캐릭터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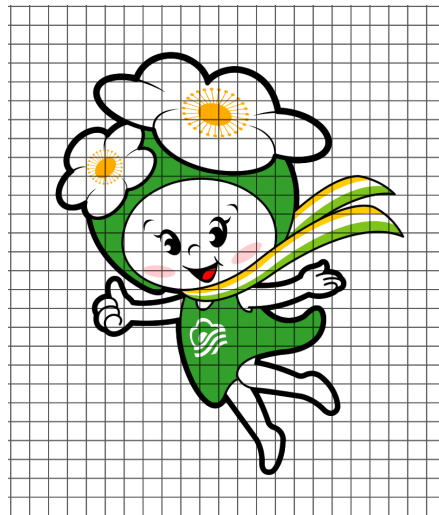


2. 캐릭터 이름 : 중랑이

3. 캐릭터 의미

늦은 봄날 맑은 중랑천 위를 떠 다니는 배꽃이 맑고 푸른 중랑구를 꿈꾸는 구민들의 염원에 의해 중랑천의 물방울과 배꽃의 모습을 한 요정으로 탄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 그리드



5. 색상



Process Color : C80%+Y100%
Pantone Color : 354C

Process Color : M33%+Y100%
Pantone Color : 123C

Process Color : M100%+Y100%
Pantone Color : Red 032C

Process Color : M20%+Y10%
Pantone Color : 182C

Process Color : M20%+Y100%
Pantone Color : 116C

Process Color : C50%+Y100%
Pantone Color : 375C



Process Back : B100%

Process Back : B70%

Process Back : B40%

Process Back : B20%

[별표 3]

꽃, 나무, 새

1. 꽃 : 배꽃

봉화산 주변에서 집단으로 재배되는 늦은 봄의 하얀 꽃은 중랑구민의
곧은 기개와 선비정신을 나타낸다.

2. 나무 : 느티나무

수관폭이 넓어 예로부터 정자나무, 정원수 등으로 사람들과 친했으며
성장이 빨라 중랑구민의 발전적인 기상을 뜻한다.

3. 새 : 까치

정원수목과 공원 등 인가 근처에서 서식하는 텃새이며 기쁜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중랑구의 새로운 발전과 희망을 나타낸다.

노래

Swing ♩ =

중랑의 노래

작사 김 지 평
작곡 김 영 광



봉 화 산 불 을 올 려 나 라 지 키 고 -
중 랑 천 굽 이 돌 아 길 고 긴 역 사 -



망 우 고 개 초 록 바 람 시 름 잊 고 쉬 던 곳 -
내 일 향 한 꿈 을 안 고 힘 - 차 게 달 린 다



해 뜨는 서울동 쪽 용마산자 락 여 기 는 살기 좋 은 변영의 고장
밝아오는 서울동 쪽 희망의터 전 여 기 는 자랑스 런 우리 의 낙원



까치 날 고 배 꽃 피 는 중 랑 중 랑 이 라 네
까치 날 고 배 꽃 피 는 중 랑 중 랑 이 라 네 D.S (2절만)

[별표 5]

구기

1. 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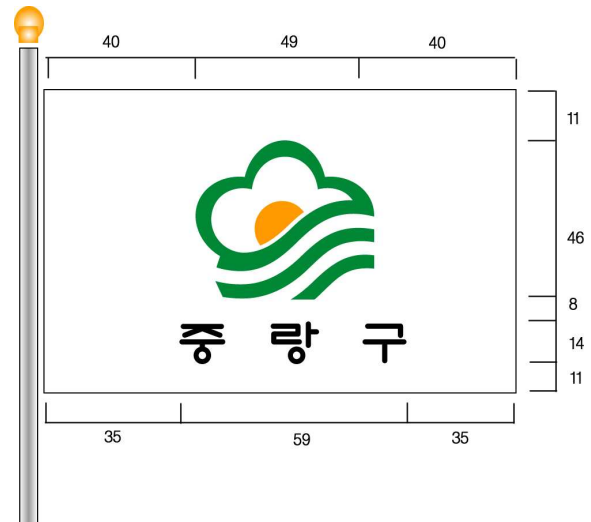
- (1) 규격 : 1290mm×900mm
- (2) 재질 : 백색 우단에
금수술 부착
- (3) 표시요소 : 지정색에
자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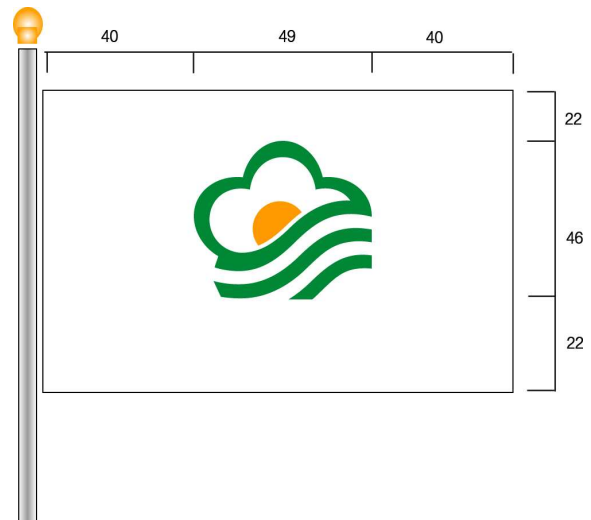
2. 약기

- (1) 규격 : 1290mm×900mm
- (2) 재질 : 합성섬유
- (3) 표시요소 : 지정색에
날염처리

[A타입]



[B타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중랑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안의 내용(안 제4조)

-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행정의 능률화 방안
- (2) 구 세입증대, 예산절감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나. 제안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가능(안 제6조)

다. 제안의 제출방법은 특정한 서식없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안 제7조)

라.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가능(안 제8조)

마. 구성(안 제9조)

- (1) 제안심사위원회 : 부구청장(위원장), 행정국장(부위원장), 각 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위원)
로 10명 이내

- (2) 실무회의 :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바.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안 제11조)

사. 공무원을 제외한 출석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안 제12조)

아. 제안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 가능(안 제16조)

자.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실무회의 상정 제안제출자에게는 격려
(기념)품 지급(안 제1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누구나 구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사항(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직접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중랑구의회 의원 1명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⑤ 실무회의는 기획홍보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회의는 기획홍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실무회의의 간사는 창의혁신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실무회의에 상정된 제안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창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창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3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국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설치 규정과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4조(방송국의 업무)

-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
-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학습 콘텐츠 제공 등

나. 제5조(사용료) ①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등의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중랑구에 주소를 둔 자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제7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라. 제11조(콘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주제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방송”이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또는 VOD(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방송국은 중랑구 청사 내에 둔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
3. 교양, 문화 등 콘텐츠 제공
4.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 학습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3만원으로 하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랑구에 주소를 둔 자나 관내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8.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족
9.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방송 강의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 3. 방영 프로그램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컨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컨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주제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단 타기관의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용료 징수, 반환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문구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1조(수입증지의 납부) 제2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3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수입증지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1조제2호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근거
법령에 맞게 개정 필요.

2. 주요골자

가. 제2조(공인의 종류)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으로,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
이미지공인”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3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하고,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1. 폐지이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2006. 1. 1. 전부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고, 2007. 4. 5.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보증 등 가입한도를 최저 일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그 존립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36호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 근거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정비 필요.
- 나. 도로명 주소의 고지에 통장뿐만 아니라 고지업무종사원을 추가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물의 범위 확대 및 관할 주민에게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중 “영 제7조제5항”을 “영 제7조제6항”으로 개정
- 나.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제2항 중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 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통장이나 고지업무종사원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
- 다.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 제7조제5항”을 “영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적으로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를“을 ”통장이나 고지업무종사원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고지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4조)

-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 (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 (3)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5)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나. 지원내용(안 제5조)

- (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
-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예산 지원
- (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 (4)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서울특별시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중랑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3.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의 달 및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사무실의 관리, 운영, 유지비의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예산 지원
3. 자원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의 지원
4. 설, 보훈의 달, 추석 등의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적정성 심사 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결정 등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 소집(안 제8조)
- 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6. 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7.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8.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9.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구 소속의 공무원
4.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인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인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구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주사 명칭 변경에 의하여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2조, 제5조, 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3조, 제4조, 제9조 중 “인”을 “명”으로, 제3조,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
나. 제4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 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담당주사”로, “보건
행정과 보건기획담당주사”를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보건
지도과 지역보건담당주사 및 정신재활담당주사”를 “보건지도과 정신보건
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인”을 “명”으로, 제2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2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정복지과 보육
지원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기획담당주사·보건지도과 지역보건담당주사
및 정신재활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서비스연계
담당주사·가정복지과 보육지원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지도과 정신보건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나.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 정수는 동별로 하고, 인구 30,000명 이상인 동은 3명으로 함(안 제3조)
- 다. 구청장은 제도의 필요성, 사명감과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교육 등을 시킬 수 있으며,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6조, 안 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신고
5. 그 밖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구성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2. 구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위원的人数은 동별 2명으로 하고, 인구 30,000명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的人数이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 중인 위원的人数이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교육) 구청장은 위원에게 제도의 필요성, 사명감과 역할,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교육, 지역사회 이해, 상담의 기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1. 기초교육은 위원 위촉 후 1월 이내
2. 보수교육은 반기별 1회

제7조(회의 등) 구청장은 위원에게 복지시책을 알려 협력을 구하고, 위원의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제안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연계·협력) 위원 중에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및 실무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사례발표 및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및 현장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랑구복지 위원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한 표창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표창대상을 정함(안 제2조)

- 1)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표창

나. 표창자 결정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 1)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다. 표창대상자 추천방법을 정함(안 제7조)

- 1) 담당관·과장 및 동장, 사회단체장 및 장애인단체 등이 추천

라. 표창수상자 예우방안을 정함(안 제9조)

- 1) 표창수상자에 대해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등 구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기관, 개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모범장애인 등 표창(이하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의 방법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자 결정) 표창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표창자 공적심사) ①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제7조의 서울특별시중랑구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대상자는 담당관·과장 및 동장, 사회단체장 및 관계기관장, 장애인단체 등이 추천한다.

제8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9조(표창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 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정비 필요.

2. 주요골자

- 가. 제1조 중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개정
- 나. 제5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며, 제5조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을 “자활기금 운용”으로 개정
- 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36조”를 “영 제3조의2”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제3호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을 “자활기금 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36조”를 “영 제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구민에게 양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법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 가능(안 제9조)
-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개선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아이돌보미 사업
7.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
8.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 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주요사업

- 1) 아동의 건강증진,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지도, 정서함양
- 2) 통합 서비스를 위한 문화활동 지원, 아동복지 향상

나. 사업비 지원

- 1)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1) 구성 : 위원장(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 11명 이내
- 2) 기능 :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 사업평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치료·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아동의 방과 후 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학대·방임 가정 및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 아동
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8조(센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하며,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및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으로 개정
- 나. 제3조제3항 중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4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랑구 체육협의회 회장 및”을 “중랑구 체육협의회 회장, 구의원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직명 변경이 필요하며,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개정
- 나. 제2조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를 “제22조”로 개정
- 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구 기획예산과장”을 “구 기획홍보과장”으로 개정
하고, 제4호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4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를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구 기획예산과장”을 “구 기획홍보과장”으로 하고, 제4호 중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근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및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
- 나. 제3조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삭제
- 다. 제6조제2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를 삭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2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다만,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근거 조항 삭제와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14조(과태료 징수절차)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를 “삭제”
- 나.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 및 본 조에 근거한 “별표1”을 “삭제”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4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계획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 본 조를 “삭제” 한다.

제15조 본 조를 “삭제” 하며, 본 조(제15조)에 근거한 “별표1”도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일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랑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안 제4조)

- (1)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 준수

나.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3호)

- (1)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중랑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함.

다.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1) 중랑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
- (2) 부위원장 1명을 공동부위원장 2명으로(도시환경국장, 민간위원)으로 확대

라. 소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1)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를 5명 이상으로 명시

마.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블라드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안 [별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관사업 ”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3.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 기준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이란 중랑구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중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 시 서울시 또는 중랑구에서 인증한 우수 공공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6호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동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 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를 “공동부위원장 중 1명이”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5명 이상의 소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을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1. 사전자문 : 건축물 외관디자인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공 공 건 축 물	가. 공공청사(구청, 동 주민센터 등) 나. 구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 중앙정부 및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축하는 (허가) 협의 대상 건축물(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라.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마. 공공 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등)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 도로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지하보도 나.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 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그 밖에 시 설 물	가. 송전탑 나. 육갑문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가로등 나. 도로명판 다. 트렌치, 맨홀 라. 제설시설	
문화관광 시 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표석	
가로녹지 시 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 시 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 시 설	가. 보행자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자전거보관대 바.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사.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아.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차. 교통 감시시설 카. 블라드, 보호펜스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보도포장, 보도·점자 블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통신안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관리대상 광고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광고시설	가. 1면의 면적이 100㎡ 이상인 신규설치 대형광고물 (옥상, 전광판) - 장소 이전 및 규격 확대를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례상 인용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인용법령 규정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중 인용규정인 「도로법 시행령」 “영 제43조 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개정
- 나. 제10조의3(수수료의 징수) 제1항 인용규정 중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5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근거 조
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2조(정의) 제1호 중 인용 법률 조항인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도로법」 ”제17조의2”를 “제15조”로 개정
- 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중 인용 법률 조항인 「도로법」 “제84조제4호”
를 “제99조제2호”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조례 제85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14조”를 “제11조”로 하며, “동법 제17조의2”를 “같은 법 제15조” 한다.

제11조 중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제99조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근거 조항 변경과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고 인용 법령명에 낫표(「 」)를 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 중 인용법령 조항인 “도로법 제22조”를 “「도로법」 제20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
- 나. 제2조(기금의 재원)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용법령 조항인 “도로법 제22조”를 “「도로법」 제20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며, “서울특별시 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하며 “관리하기 위해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안 제4조제2항)
-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
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 제7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될 사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2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본 조례 근거 법령 중 「지방재정법」 등이 전부개정 되면서 「지방재정법」
내용 중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과 인용 조항을 변경
하고 조례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는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골자

- 가.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일본어 차용문자 등 수정
- 나.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 중“「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개정
- 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으로 개정
- 라. 제13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은행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제1항** 중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6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1항 제6호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70%”를 “70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를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로 하고, 제4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하고,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매”를 삭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제5조(겸직신고)를 신설하여 의원이 겸직을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도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을 신설하여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을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지 방 의 회 의 원 겸 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 직 기 간		
	보 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 화 번 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세무직 및 사회복지직의 인사적체 해소 및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정원 규칙을 개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원조정

(단위 : 명)

직 렬	기 준	개 정	비고
7급(다급)			
세무	18	21	3
사회복지	12	15	3
8급(라급)			
세무	30	27	△3
사회복지	29	26	△3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칙 제58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랑구 직급별 ·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총 계	1,179	827	27	101	224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910	616	12	90	192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기관	4	3	1		
서기관·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57	29	0	12	16
행정	38	22			16
시설	4	4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공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보건	2			2	
의무·약무	1			1	
의무·간호·보건·의료기술	1			1	
의무(가급)	8			8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6급(나급) 소계	189	136	3	18	32
행정	117	91	3	7	16
세무	11	11			
행정·사회복지	21	5			16
전산	1	1			
공업	5	5			
녹지	4	4			
약무	2			2	
보건	4	1		3	
간호	5			5	
의료기술	1			1	
시설	17	17			
홍보(계약직)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7급(다급) 소계	271	178	3	31	59
행정	170	113	3	7	47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3			12
전산	3	2		1	
공업	9	9			
녹지	4	4			
수의	1	1			
약무	2			2	
보건	6	1		5	
간호	13			13	
의료기술	3			3	
환경	1	1			
시설	21	21			
통신	1	1			
교통전문요원(계약직)	1	1			

기관별 직렬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8급(라급) 소계	274	186	4	24	60
행정	139	89	4	3	43
세무	27	27			
사회복지	26	9			17
전산	4	4			
공업	9	9			
녹지	4	4			
보건	5			5	
간호	11			1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시설	34	34			
통신	1	1			
교통(계약직)	2	2			
도시계획(계약직)	1	1			
영상기사(계약직)	1	1			
보도편집(계약직)	1	1			
평생교육(계약직)	1	1			
도시디자인(계약직)	1	1			
홍보(계약직)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9급(마급) 소계	111	81	1	4	25
행정	54	32		2	20
세무	10	10			
사회복지	10	5			5
전산	3	2	1		
공업	5	5			
녹지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시설	16	16			
통신	2	2			
사회복지상담(계약직)	1	1			
전산교육강사(계약직)	1	1			
전산운영(계약직)	1	1			
평생교육(계약직)	0	0			
도시디자인(계약직)	1	1			
기록물관리(계약직)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행정·별정직 계	4		4		
5급(상당)소계	2		2		
행정·별정	2		2		
6급(상당)소계	2		2		
전문위원	2		2		
별정직 계	13	7	5	1	
6급상당 소계	3	3			
민방위교육훈련담당	1	1			
비서	1	1			
체육지도사	1	1			
7급상당 소계	7	4	2	1	
비서	2	1	1		
화생방관리원	1	1			
체육지도사	1	1			
광고물자료조사원	1	1			
속기사	1		1		
식품영양사	1			1	
8급상당 소계	1		1		
속기사	1		1		
9급상당 소계	2		2		
비서	1		1		
속기사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 건 소	동
기능직 계	251	203	6	10	32
기능6급 소계	8	8			
전기	3	3			
기계	2	2			
운전	3	3			
기능7급 소계	26	26			
전기	4	4			
기계	2	2			
운전	10	10			
사무	3	3			
조무	4	4			
방호	3	3			
기능8급 소계	100	90	3	5	2
전기	4	4			
기계	4	4			
운전	35	32	1	2	
위생	4	3		1	
사무	29	23	2	2	2
조무	22	22			
방호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 본 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기능9급 소계	63	47	3	5	8
전기	5	5			
기계	7	6	1		
운전	25	14	1	3	7
농림	1	1			
위생	4	2		2	
사무	1				1
조무	13	13			
방호	7	6	1		
기능10급 소계	54	32	0	0	22
전기	2	2			
기계	12	12			
운전	19	10			9
위생	2	2			
조무	17	4			13
방호	2	2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창업지원센터의 최소입주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입주기간 종료에 따른 입주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에게 안정적인 입주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기간 연장

- 1) 지원센터의 최소입주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 2) 6개월인 입주연장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입주자에게 안정적인 입주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입주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
기업창업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입주개시일로부터 6월이상”을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고, 단서 중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